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A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지역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론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92-3)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 **신재우**



Q 형광등을 교환하지 얼마 되지 않아 등구 양쪽 끝이 까맣게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A 전구의 양쪽 끝에 까맣게 됐다 것은 전구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형광등구 수명이 짧은 원인은 형광등구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형광등의 안정기가 수명이 완료되었거나 불량일 경우가 많습니. 또한 육체 사용전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등기구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형광등구의 수명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 형광

등 교체시 안정기도 함께 교환하시기 바람. 만약 전압조정기를 사용함으로써 육체전압이 높은 경우는 적정전압으로 낮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형광등을 켜면 등에서 원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A 형광등은 내부구조상 안정기에서 다소의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나 소음을 클 경우는 아래와 같은 원인입니다. 첫째, 형광등속의 안정기(초코코일) 불량 및 안정기 수명이

거의 완료된 경우 둘째, 형광등 조립용 볼트 나사의 이완상태 등입니다. 안정기가 불량하거나 수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안정기를 교체하여야 하고 조립 볼트가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볼트 나사를 조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Q 형광등을 소등했는데도 희미하게 불을 켜 것 같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A 형광등을 소등한 상태에서 불을 켜 것처럼 희미하게 되는 경우는 220V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불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잔광현상이라 하며, 원인은 형광등에 전원(전선) 연결시+선과-선이 서로 잘못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전선을 상호교환해서 연결하면 이러한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Q 코골이,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2)

그 이유는 수술이 가지는 몇 일간의 불편감도 있었지만 수술적인 치료로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그 원인입니다. 저 또한 환자를 보면서 보다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덜 위험하게 코골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나름대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나 국외에서 코골이를 수술하지 않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제가 직접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코비메디'라는 사이트를 통해 코골이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골이의 치료의 두 가지 큰 축인 수술적인 방법과 상기도 양압기 치료라는 방법외에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를 포함한 다른 이비인후과에서도 흔히 시행되고 있는 위 두 가지 치료방법 이외에 제가 연구하여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들을 3가지로 나누어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 외래에서 제가 연구하여 임상에 사용하는 코골이 개선 프로젝트는 코 호흡 촉진 프로그램, 수면자세 교정 프로그램, 구강내 보조장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때로는 병합 치료를 통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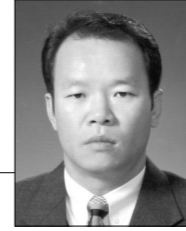
니다. 물론 적용방법은 각각의 코를 고는 환자의 코골이의 원인부위와 기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의 타겟 목표는 코구멍에서 시작해서 인두를 거쳐 폐까지 이르는 공기의 통로 즉 기도를 넓혀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코호흡 촉진 프로그램에서는 코밴드와 비공확장기를 이용하여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줍니다. 이 경우는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 비중격 만곡증으로 코막힘과 동시에 코를 고는 코골이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아울러 외부에서의 확장외에도 비염치료 항아리를 이용하여 코골이를 유발하는 코안의 내부적인 문제인 비열 등을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코 호흡이 증진되고 코로 숨을 쉬게 되면서 코로 들어가는 공기층이 두꺼워짐으로 목젓과 인두사이의 '공기 이불'이라고 이를 불인 층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젓의 떨림으로 일어나는 코골이가 호전이 됩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48)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여부]

Q 저는 甲으로부터 직기(織機)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甲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자기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제가 甲으로부터 위 직기들을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 직기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甲은 저에게 직기를 매도한 직후 행방불명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양도담보란 신용의 수수를 채권의 형식으로 존속시키고 신용을 준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지며, 신용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에 의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담보화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업용 재산의 담보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도담보 된 물건을 선의취득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동산의 경우에는 평은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그러므로 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도담보의 존재에 관하여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례도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 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 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372조, 제471조, 대법원 1997.6.27. 96다5133)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성인 여성 또는 10대의 소녀는 월경 기간 중에도 임신하는 수가 있는가?

A 그렇다. Kinsey연구소는 생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월경이 없는 기간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자는 여성의 내성기 속에 길 때는 8일 동안이나 살아가기도 한다. 이 점은 비록 여성

여성이 월경 기간 중에 임신할 위험성은 월경 이외 때만큼은 높지 않으나 그것은 가능하며 사실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춘기의 여성은 월경과 배란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또 정자는 여성의 내성기 속에 길 때는 8일 동안이나 살아가기도 한다. 이 점은 비록 여성

이 월경 기간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49%는 모르고 있었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가장 올바르게 응답하였다.

이 월경 기간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49%는 모르고 있었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가장 올바르게 응답하였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표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 법인세와는 별도로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까?

- 사례 : 법인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자를 법인으로 명의 신탁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대금을 상여처분은 부담하다고 불복 청구함.

A 법인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이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에 대하여는 배당,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하여 당초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제'와 같은 경우는 처분부동산이 개인의 소유로서 법인에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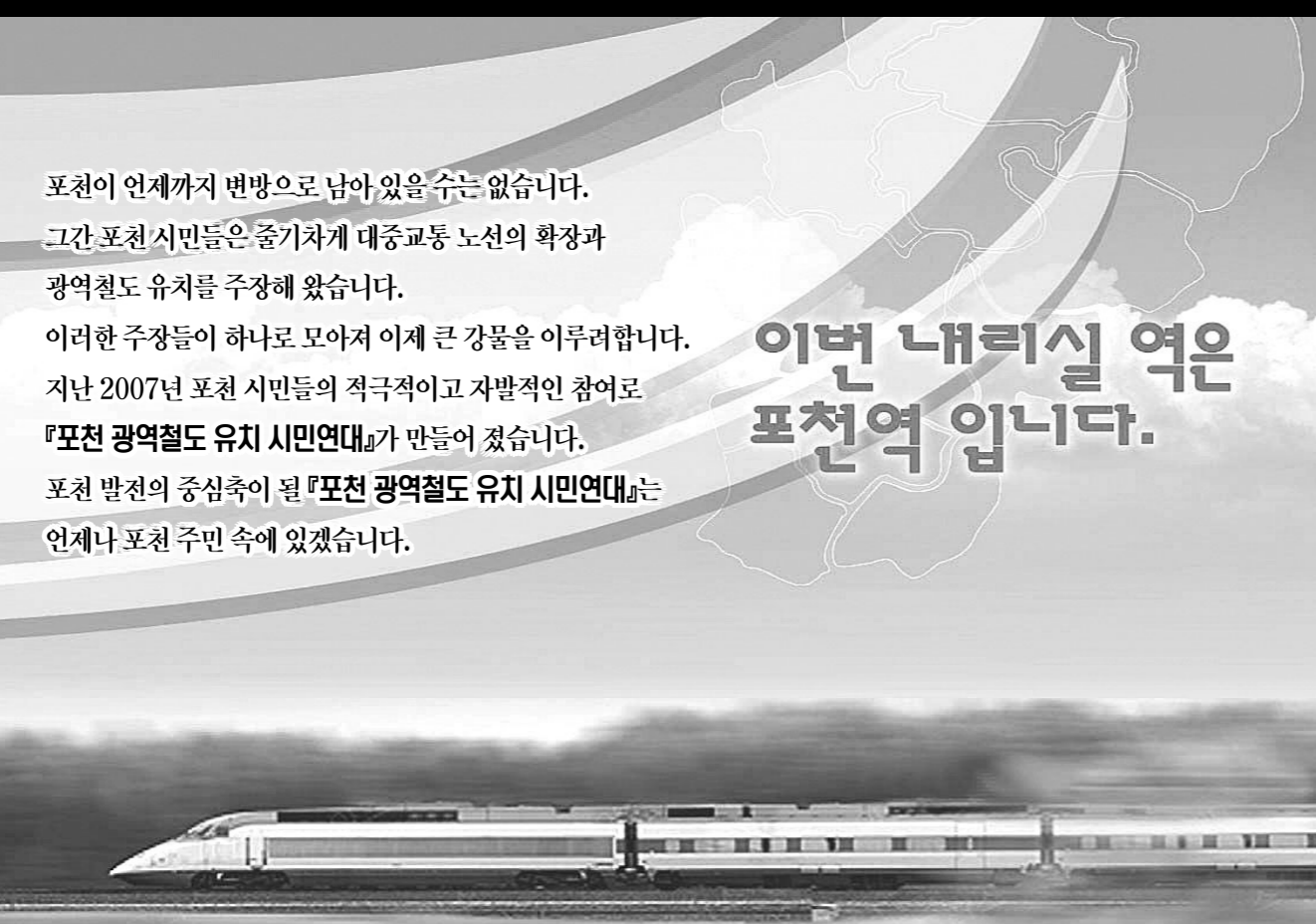
대표이사(개인)의 주장대로 개인소유임을 밝히기 위하여는 당초 부동산 취득시의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법인의 회계처리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법인의 장부에 아무런 기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주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나 개인소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때에 국세청의 결정내용과 같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은 자기법인의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임금과 출금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포천 광역철도 유치 시민연대



포천이 언제까지 변방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간 포천 시민들은 줄기차게 대중교통 노선의 확장과 광역철도 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로 모여져 이제 큰 강물을 이루려합니다. 지난 2007년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포천 광역철도 유치 시민연대』가 만들어 졌습니다. 포천 발전의 중심축이 될 『포천 광역철도 유치 시민연대』는 언제나 포천 주민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내리실 역은 포천역입니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포천 광역철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표 : 안경희(010-6349-8306) 운영위원장 : 유병권(018-222-6543) 포천 광역철도 유치 시민연대(대표 안경희) 후원계좌 : 농협 225069-51-253350(유병권) cafe.daum.net/pc7788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로 비상 금호생명 포천지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됩니다.

수석팀장 박혜자 매니저 박미라 매니저 김윤자

고객의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적인 변화로 영업조직의 전문화 및 차별화로 경쟁에 대응하며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무한한 도전의식을 갖고 싶은 여러분 모두를 금호생명 FP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두드리십시오 문을 반드시 열립니다.

연락처: 금호생명 포천지점 031)536-1473, 지점장 018-280-3003